

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2나20256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2나202560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0가합60773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임윤정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길

변론 종결2022. 11. 17.

판결 선고2022. 12. 8.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0가합60773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1.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11.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97,131,37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131,3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쓰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의 "2018. 11. 1."을 "2018. 11. 2."로, 제4면 아래에서 제1행의 "M"를 "V"로, 제5면 제3행의 "2019. 7. 26."을 "2019. 7. 29."로, 제5면 아래에서 제2행의 "이 사건 경매"를 "이 사건 임의경매"로 각 고쳐쓴다.
- 제1심 판결 이유의 "피고 B"을 "피고"로, "피고 C, D, E"을 "C, D, E"으로 문맥에 맞게 모두 고쳐쓰고,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 6, 7, 8, 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최종적으로 배당받은 금액인 97,131,377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은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위 97,131,3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5행의 "2019. 4. 19."을 "2019. 4. 10."로 고쳐쓴다.

3. 추가판단

원고는 F 등을 고소한 2019. 7. 31.은 물론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채무자인 F의 자력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한 사실 및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 이유 3. 다.의 1)항(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3행부터 제10면 제8행까지)에서 인정한 사실(2019. 4.경부터 7.경까지의 원고의 등기부 열람, 법률자문의뢰, 권리보험사고조사의뢰 등)에 더하여 보험사로서의 원고의 조직규모나 업무내용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2019. 7. 31. 'F 등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대출약정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으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지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F 등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위 2019. 7. 31.경에는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F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그때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12. 22.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로서 부적법하다.1)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남성민

판사백숙중

판사유동균

별지

1) 한편, 제1심에서 원고대리인은 피고의 본안 전 항변(2022. 4. 6. 자 준비서면 참조)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다가 제1심 변론을 종결하는 제3회 변론기일에 '청구 포기,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희망한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